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32 발의연월일: 2024. 10. 16.

발 의 자:이강일・이기헌・황명선

김남근 • 민병덕 • 박홍배

김남희 · 정준호 · 김우영

허 영・임미애・서영교

황운하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영진,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하고, 특정 주주 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보와 영향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소액주주 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 명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함께 공정의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특히,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들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경영에 대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여,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소액주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7까지 신설, 제635조제4항제3호 신설).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및 공정의무 강화(안 제382조의3 개정)

이사의 직무 수행 시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 정함. 이를 통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 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나. 횡령·배임 범죄로 기소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안 제542조의14 신설)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소된 경우, 일정 비

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이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혐의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다.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안 제542조의15 신설)

대주주나 이사 등이 횡령·배임으로 기소되거나 외부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경우, 해당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에 주주총회 검사인과 의장을 선임할 것을 청구해야함. 이를 통해 경영진의 부정 행위로 인한 주주총회 불공정성을 방지함.

- 라. 합병·분할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안 제542조의16 신설)
 - 상장회사가 합병, 주식교환, 분할 등의 주요 경영 행위를 할 때,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권익을보호하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억제함.
- 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의무화(안 제542조의17 신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주주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주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임.
- 바. 전자주주총회 미준수 시 처벌 규정 신설(안 제635조 개정) 전자주주총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최하지 않거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자주주총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및 공정의무)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편향됨이 없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4(횡령·배임 주주의 의결권 제한) ①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제542 조의8제1항제5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라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 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중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제1항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른 무죄 판결, 제326조에 따른 면소 판결,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또는 제328조에 따른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2. 제1항의 공소제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 3.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 때
- ③ 제1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2조의15(주주총회에 대한 조치) ①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제542 조의14에 따른 대주주,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로 공소 가 제기되거나 의견 거절의 외부감사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주주총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 1. 제3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는 법원에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2. 제3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는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542조의16(합병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 ① 상장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는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 모회사 및 자회사와 자회 사 사이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할 때에는 최대주주(그의 특 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 한다)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 4. 분할합병
 - 5. 분할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현물출자로 인한 회사의 설립 제542조의17(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특례) ① 제368 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주주총회"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있어서는 제368조의4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635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542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로 하여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제542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63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생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및
략)	<u>공정의무)</u>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 또는 이해관계
	인의 이익에 편향됨이 없이 전
	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
	호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542조의14(횡령·배임 주주의
	의결권 제한) ①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
	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제542조의8제1항제5호
	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
	<u>식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u>
	자(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라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5
	5조 또는 제356조의 죄로 공소
	가 제기된 때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중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 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 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 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제1항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른 무죄 판결, 제326조에 따른 면소 판결,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또는 제328조에 따른 공소기각 관결 또는 제328조에 따른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2. 제1항의 공소제기에 따라 유
 죄가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 지난 경우
- 3.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신 설>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 의 의견이 있는 때

③ 제1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2조의15(주주총회에 대한 조치) ①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제542조의14에 따른 대주주,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 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의견 거절의 외부감사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간 주주총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제3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는 법원에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 다.
- 2. 제3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는 법원에 주주총회

<신 설>

<u>의장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u> 다.

제542조의16(합병 등에 대한 의 결권 행사의 제한) ① 상장회 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는 제342조의 2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사 이, 모회사 및 자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 다)를 할 때에는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 식을 합산한다)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 과하는 수의 주식에 관하여 의 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 괄적 이전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 4. 분할합병
- 5. 분할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신 설>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為) ① |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為)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이상의 현물출자로 인한 회사 의 설립

제542조의17(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특례) ① 제368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 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권을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 자주주총회"라 한다)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의 개최에 있어서는 제368조의 4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4)	 	 	 	- —
	 	 	 	- —
	 	 _		

- 1. 2. (현행과 같음)
- 3. 제542조의17제1항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주 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

나 주주로 하여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